

## 1. 제정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32148호, 2021.11.23., 일부개정)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의무량 감경 대상의 명확화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신설)  
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를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하고 그 실적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
- 나. 재활용의무량 감경 절차 등 구체화(안 제4조, 안 제5조 신설)  
재활용원료의 사용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의 산정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를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제출서류)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, 원료 수불부 등)
2.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(별지

제2호서식) 1부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4조(감경절차 등)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(이하 “재활용부과금”이라 한다)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.

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.

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.

$$\text{출고량} \times \text{해당 연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} \times \text{재생원료사용비율}^*$$

$$* \text{재생원료 사용비율} = \text{재생원료량} \div \text{출고량}$$

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·포장재 출고량

의 최대 20%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.

1.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·포장재 출고량의 5% 비율

제5조(기타사항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서식]

## 제품·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

※ EPR([www.iepr.or.kr](http://www.iepr.or.kr)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인	상호	전화번호	법인등록번호
	주소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대표자(개인사업자) 생년월일

	①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	② 상품명(규격)	③ 재활용 원료 사용량(kg)	비고
자료 제출내용			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·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**한국환경공단** 귀하

첨부서류	1.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# 작성방법

1. ①란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·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(예: 종이팩, 타이어)
2.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.
3. ③란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##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

※ EPR([www.iepr.or.kr](http://www.iepr.or.kr)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

①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	② 상품명(규격)	재활용원료 사용량		
		계 (A×B)	개당 사용량(A)	연간 출고량(B)
	계			
	제품A			
	제품B			
	제품C			

- ①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: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·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
- ② 상품명(규격):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

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

재활용원료 제조업체			구입일자 (연월일)	구입량 (kg)
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 및 연락처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